

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**계약 기간**은 수급자와 서비스제공계약을 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 변동, 비용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한다.
2. **계약 목적**은 신체적 · 정신적 · 정서적 장애로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유지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,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
3. **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**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.
 - 가.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개인별로 본인 부담 비율을 달리한다.
 - 나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 - 다.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(할인)대상자는 경감(할인)한다.
 - 라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에 명시된 비율에 의한다.
4. **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 및 의무**
 - 가. **신원인수인의 권리**
 - (1) 이용자의 복지혜택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.
 - (2)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
 - (3)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에 관하여 절차를 통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.
 - 나. **신원인수인의 의무**
 - (1)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
 - (2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
 - (3) 인적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통보해줄 의무
 - (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 - (5)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 · 퇴원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 - (6) 기타 센터의 제반 규칙 이행 의무
5. **(계약의 해제)** 아래의 경우, 센터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가.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나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다.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라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 - 마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6. **서비스 제공자의 의무**
 - 가.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 - 나.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다. 표준 수발서비스에 근거한 성실한 서비스제공 의무

7.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

가.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

나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
다.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1부